

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

1.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

위탁업무	수행기관
가.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나.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업무 다.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)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)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3)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4)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·관리 5)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6)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	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
라.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, 발급 및 관리	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
마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바.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·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	한국건설기술연구원
사.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·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	한국건설기술연구원

위탁업무	수행기관
<p>아. 법 제20조의6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)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·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)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)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·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)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무에 관한 사항 	<p>※ 위탁업무별 교육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음</p>
가) 아목 4)의 업무 중 교육·훈련 상황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에 한함	한국건설기술인 협회
나) 아목 각 호의 업무 (단, 가)에 따른 업무는 제외)	한국건설인정책 연구원
<p>자.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)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·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3)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 (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) 4)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 	<p>※신고 대상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</p>
가) 건축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	대한건축사협회

위탁업무	수행기관
나) 단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 (단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소속 건설기술인 제외)	한국엔지니어링협회
다) 단일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	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
라) 가)부터 다)의 소속 건설기술인을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인[가]의 건축사사무소중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은 포함한다]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	한국건설기술인 협회
마) <삭제>	
바)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의 자목 2)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	한국건설엔지 니어링협회
사) 발주청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	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 인협회

위탁업무	수행기관
<p>차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·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</p>	<p>대한건축사협회</p> <p>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</p> <p><삭제></p> <p>한국엔지니어링협회</p> <p>한국건설기술인협회</p>
<p>카.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, 변경등록 또는 휴업·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</p>	<p>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</p>
<p>타.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 2)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3) 영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접수·확인·관리 4)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실적의 접수·확인·관리 5)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	<p>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</p>

위탁업무	수행기관
가) 타목 5)호의 업무 중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(단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제외)	한국엔지니어 링협회
나) 타목 5)호의 업무 중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	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
다) 타목 5)호의 업무 중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	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
라) 타목 5)호의 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(단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및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(감리 제외)에 한함)	한국건설관리 협회
마) 타목 5)호의 업무 중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	한국기술사회

위탁업무	수행기관
파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,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	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
하.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	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
거.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·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	국토안전관리원
너.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)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2)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	국토안전관리원
더.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점의 종합관리	건설산업정보센터
러. 법 제54조제2항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·확인·관리	국토안전관리원
머.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)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·기술적인 심사 2)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전문·기술적인 사항	한국건설기술 연구원

위탁업무	수행기관
버.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의 접수·확인·관리	국토안전관리원
서.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·확인·관리	국토안전관리원
<p>어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</p> <p>1)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·확인</p> <p>2)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·관리</p> <p>3) 영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</p>	국토안전관리원
저.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	국토안전관리원
처.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	국토안전관리원
커.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·운영	국토안전관리원
터.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·확인·관리	국토안전관리원
퍼.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·지원과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	국토안전관리원

위탁업무	수행기관
허.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	국토안전관리원
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목 바)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자료출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. 2.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자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 3. 건설산업정보센터는 더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타목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, 너목에 의한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 	

2.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

통보할 사항	수행기관
가.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통보	※ 시·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
1)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·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1항)	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<삭제> 한국엔지니어링

통보할 사항	수행기관
	협회 한국건설기술인 협회
2)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2항제1호)	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 <삭제>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
3)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2항제2호)	건설산업정보센터
4)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 2항제3호)	국토안전관리원
5)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2항제4호)	한국건설기술 연구원
6)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업무 처리현황(영 제115조제2항제6호)	

통보할 사항	수행기관
(가)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과태료 관련,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	(가) 국토안전관리원 (나)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회 <삭제>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건설기술인 협회
7)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·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(영 제115조제2항제 6호)	한국건설기술 연구원
나.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현황의 관리	한국건설엔지 니어링협회

3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